

악취방지법의 의미와 양돈농가에 미칠 파급효과



최홍림 교수

서울대학교 농생대 동물환경연구실

1. 들어가며

〈그림 1〉과 같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대표 축종인 돼지의 경우, 1980년 총사육두수는 284만두, 호당 9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2004년 3월 현재 900만두로 호당 646두에 이를 정도로 양돈업은 전업화(專業化), 기업화(企業化)되었다. 양돈이 이러하듯이 축산전반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가축사육으로 인한 불쾌한 냄새의 세기도 자연히 점증(漸增)되어 이로 인한 주변 비축산 정주민의 불쾌취에 대한 민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 2001년 악취로 인한 민원건수는 2,760건이던 것이, 2002년에는 2,878건, 2003년 상반기에는 이미

1,550건을 넘어서 이를 기초로 연간 건수를 추정하면 3,000여건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하듯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하여 환경부에서는 축산으로 인한 악취의 규제도 점차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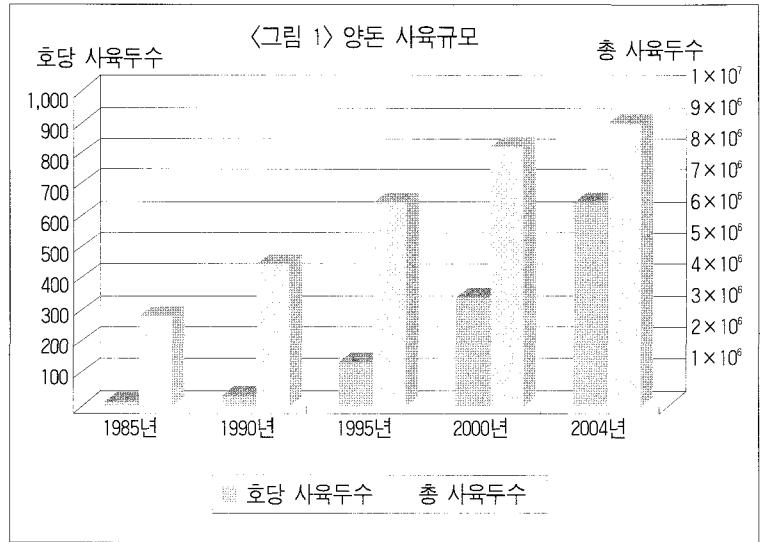
2. '악취방지법'의 내용

구체적으로 2004년 2월 9일 환경부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악취관련

〈표 1〉 연도별 악취 민원 건수의 변화*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민원 건수	2,760	2,878	1,550 (상반기)

* 환경부 내부자료



조항을 분리, 독립시켜 「악취방지법」을 공포하고, 축사 인근의 악취발생을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고시하였다.

「악취방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중 특별히 악취만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범인만큼 축산 관련 악취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보다 강화되거나 기존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를 축산농가나 육가공시설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환경부의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다. 이를 반영하듯 축산농가가 「악취방지법」을 어겼을 때 벌칙·과징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한 예이다.

최근 일부 축종은 계절적 요인 또는 전기(前期)에 질병 때문에 사육두수가 조정되어 육계와 양돈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하반기에 사료값 인상, 수입육 증대 등으로 농가수익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2005년 2월 「악취방지법」의 전면 실시는 축산농가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래 「대기환경보전법」은 악취 뿐 아니라

대기오염의 모든 규제를 총괄한 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는 축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축사는 불쾌취를 발생시키지만 환경에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은 포함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은 듯하다. 다만, 축사는 생활악취배출시설로 구분되어 악취제거시설 또는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을 포함한 악취에 관련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악취방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순간적이고 국지적인 악취의 발생·소멸을 규제하기가 힘들다는 판단하에 제정된 것이다.

「악취방지법」의 축산관련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정악취물질을 암모니아, 메칠머캅탄, 황화수소 등 22개 물질로 정하며, 이중 축산관련 대표 악취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의 허용배출농도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로서 각각 1~2ppm, 0.02~0.06ppm을 제시함.(案 제3조, 제8조 제1항, 별표 1 및 별표 3)

② 악취배출시설에 축산시설, 도축·고기가 공 및 저장처리시설 등 48개 시설로 정함(案 제3조 및 별표 2)

③ 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案 제 7조)

④ 법 11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법위반



에 대한 별처 또한 매우 엄격해져, 「악취방지법」이 상징적 의미만을 가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악취방지법' 시행의 전제조건

환경부가 「악취방지법」을 제정하고 이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축산농가에 적용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제조건은 축산농가에게 우선 악취방지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생존도구(survival kit)를 먼저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축산농가라 하여 주위에 누를 끼치는 발생 불쾌취에 대한 저감노력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양축가 스스로가 실제 축사 내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축산농가들에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실용적 악취저감도구(practical offensive odor abatement tool)'가 없다. 그들에게 우선 도구를 손에 쥐어주고 '하니, 안하느니' 시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악취저감을 위한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방법으로는 우선 축사의 악취공기를 포집하여 여과·저감시키거나, 고효율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재의 투여이다. 전자는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축사가 자연환기 방식으로 되어 있어 어떤 형태로든 실내공기를 포집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의 한 예로 축사를 밀폐화하여 오염공기를 포집하여 '도구'를 이용하여 회석배출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자연환기 원치커튼 축사를 수정보완하여 밀폐화하고 바이오플터(biofilter)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단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대기축을 위한 축사

는 밀폐화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효과적인 상용미생물제재(劑材)를 선정하여 보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후자는 바로 적용할 수도 있으되 전자의 경우, 악취방지가 가능한 저비용 표준축사('도구') 및 관리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최소기간 동안 법 적용을 유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림부에서는 축사 수정·보완,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대폭적이며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축산관련 대표 악취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의 허용배출농도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로서 시행규칙안 제3조 별표 2에 각각 1~2ppm, 0.02~0.06ppm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축산농가의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의 농도가 각각 0.2~7.5ppm, 0.0~0.053ppm으로 현재 안의 기준값을 적용할 경우,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위반하게 되므로 이를 3~5년 동안 이 기준값의 두 배 정도 즉, 암모니아 5ppm, 황화수소 0.05ppm 이하를 적용하고,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 여러 형태의 악취저감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의 기준으로 3~5년 후 현재 안의 기준값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끝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일반 산업에서 발생되는 인체에 유해한 악취와 상대적으로 장기적이며, 저수준으로 인체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불쾌취를 발생하는 축산과는 구분하여야 하므로, 단지 악취 민원이 3년이상 지속된다는 사유만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소지가 있는 제7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를 축산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돈**